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5
----------	----------

제출연월일	2008. 2. 0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07. 12. 13. 공포)사항을 반영하고,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불부합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본청 여유기구를 실과에 포함(안 제3조, 제4조)

○ 여유기구(전략사업추진단) ⇒ 실과에 포함

다. 읍면 직무의 기초사무 수정(안 제24조)

○ 호적 ⇒ 가족관계등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 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1. 9. ~ 1. 29.)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실·과의 설치”를 “실·과·단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을 “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을”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략사업추진단장

가.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나.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 ----- ----- -----.</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u>재난안전관리과</u>를 둔다.</p>	<p>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 ----- ----- ----- ----- ----- ----- <u>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을</u>-----.</p>
<p>② <u>실·과장</u>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 12. (생략)</p> <p><신설></p>	<p>② <u>실·과·단장</u>-----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전략사업추진단장</u> 가. <u>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 나. <u>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 다. <u>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u></p>

